

의안번호	제 155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5월 일 (제 300 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5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5
------------	-----

제출연월일 : 2011년 5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2011년 3월 25일자 조직개편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위임사무 조정(삭제) : 2건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및 몰수 마약류의 폐기·처분 등
  - ※ 법제처 법률해석 결과 도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로 판명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 위임규칙에 반영 재위임

#### ○ 위임범위 조정 : 1건

-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 당초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 개정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

####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 1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균형개발과 → 도로과

#### ○ 관계법령 정비 : 3건

- 도세 징수유예, 도세 기한의 연장, 도세 결손처분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세정과, 식품의약품안전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도로과”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정과	1	· 도세 징수유예	지방세기본법 제80조
	2	· 도세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26조
	3	· 도세 결손처분	같은법 제96조
	4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 7조
식품의약 품안전과	1	·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53조, 88조
	2	· 한약업사의 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3	·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4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5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 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6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7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8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9	· 마약의 소매 보고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10	· 행정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11	· 청문(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45조
	12	·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13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림 녹지과	1	·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
	3	· 종.묘생산업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4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같은법 제16조
	5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사무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법 제8조
	6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7	· 간선임도 설치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8	· 군지역 또는 시의 읍 · 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 · 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균형 개발과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2	· 시장 · 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 지역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함)	같은법 제30조, 제50조
	3	·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다. 궤도</p> <p>라. 삭도</p> <p>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p> <p>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p> <p>사.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p> <p>아.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m<sup>2</sup>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p> <p>자. 공동구</p> <p>차. 공공공지</p> <p>카. 수도공급설비</p> <p>타. 전기공급설비</p> <p>파. 가스공급설비</p> <p>하. 방송·통신시설</p> <p>거. 시장</p> <p>너. 열공급설비</p> <p>더.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p> <p>러.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p> <p>머.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p> <p>버. 도서관</p> <p>서. 문화시설</p> <p>어. 연구시설</p> <p>저. 사회복지시설</p> <p>처. 공공직업훈련시설</p> <p>커. 청소년 수련시설</p> <p>터. 유수지</p> <p>페. 방화설비</p> <p>허. 저수지(댐 제외)</p> <p>고. 방풍설비</p> <p>노. 방수설비</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 사방설비 로. 방조설비 모. 하수도 보. 도축장 소. 장례식장 오. 종합의료시설 조. 폐차장 초.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코. 폐기물처리시설 토. 수질오염방지시설 포. 하천(소하천에 한함) 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화장시설 두. 봉안시설 루. 자연장지 무. 공동묘지	
4	· 기존면적포함 15만 m <sup>2</sup>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5	· 기존면적포함 15만 m <sup>2</sup> 미만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법 제30조, 제49조, 제50조
6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9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 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법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법 제13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li> <li>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li> <li>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li> <li>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li> <li>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li> <li>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li> <li>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li> <li>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li> <li>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법 제4조</li> <li>같은법 제9조</li> <li>같은법 제17조, 제18조</li> <li>같은법 제19조</li> <li>같은법 제20조</li> <li>같은법 제26조</li> <li>같은법 제58조</li> <li>같은법 제66조</li> <li>같은법 제68조</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li> <li>나. 선수금 승인</li> <li>다. 준공검사</li> <li>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li> <li>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li> <li>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같은법 제13조</li> <li>같은법 제25조</li> <li>같은법 제50조</li> <li>같은법 제51조</li> <li>같은법 제52조</li> <li>같은법 제53조</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 m<sup>2</sup> 미만의 주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li> <li>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포함)</li> <li>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li> <li>같은법 시행령 제13조</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li> </ul>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로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li> <li>나. 점용공사의 확인</li> <li>다. 점용료의 징수</li> <li>라. 점용료의 징수제한</li> <li>마. 원상회복</li> <li>바. 변상금의 징수</li> <li>사. 수수료의 징수</li> <li>아. 과태료 부과징수</li> </ul> </li> </ul>	<p>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p> <p>같은법 제40조제3항</p> <p>같은법 제43조제1항</p> <p>같은법 제44조</p> <p>같은법 제45조</p> <p>같은법 제80조의2</p> <p>같은법 제77조의2</p> <p>같은법 제86조의2</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li> <li>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li> <li>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li> </ul> </li> </ul>	<p>도로법 제50조제4항</p> <p>같은법 제50조제4항</p> <p>같은법 제50조제6항</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li> <li>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li> <li>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li>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li> </ul> </li> </ul>	<p>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 1항</p> <p>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 2항</p> <p>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 2항</p> <p>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 2항</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li> <li>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li> <li>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li> </ul> </li> </ul>	<p>도로법 제29조</p> <p>같은법 제31조</p> <p>같은법 제54조제1항</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감정, 분할축량, 보상금지급, 잔여지 매입, 소유권 이전 등)  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도로법 제67조제1항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의2  같은법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64조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5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 수익허가	같은법 제14조, 제20조
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7조

## 관련 법령 발췌

### < 공통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 세정과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 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